

서울대공원 공무원 채용시험 재 공고 (안)

서울대공원 시설과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재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4월 일

서울대공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정비원 (기계)	공무직	(접수마감)	서울대공원 시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난방 시설물 유지관리 ◦ 기계배관 및 설비보수 ◦ 기계설비 유지보수 업무종사자 4명
시설정비원 (전기)		(접수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고압전력설비 운용 및 각종시설(건물)의 전기설비의 정비 및 유지관리 ◦ 전기안전관리자 1명
시설정비원 (영선)		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시설물·토목시설물 보수작업 및 유지관리 ◦ 관람객 관람환경 개선작업 ◦ 수방기간 시설물 점검보수 및 동절기 제설작업 ◦ 미장기능사 1명, 건축목공기능사 또는 건축목공산업기사 1명

2. 응시 자격

□ 일반(공통)사항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정신질환 및 전염병, 질병 등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공무원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원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원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www.share.go.kr/>) → e하나로 민원

■ 공무원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자격(기술)사항

○ 시설분야 해당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서 필수 근무경력 (기계분야 3년이상, 영선분야 3년이상, 전기분야 2년~4년이상)이 있는자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채용분야	자격증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이상
시설정비원 (기계분야)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해당분야 기능장
시설정비원 (전기분야)	-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시설정비원 (영선분야)	미장기능사	-	-
	건축 목공기능사	건축목공 산업기사	-

- 경력인정 : 공공기관, 시설관리용역사 등에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해당분야의 근무경력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함

《유사 경력증명서 인정사례》

- 기계분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 대한설비협회, 등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 전기분야
전력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 영선분야
한국건설기술인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등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시설분야: 일근 또는 교대근무(기계 전기분야) 및 연중무휴 개장되는 사업장 특성상 휴일근무 있음
- 보수조건 : 공무원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23,461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참조
- 채용해지 : 공무원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19. 4. 29.~ 5. 10.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0일	-
원서접수	2019. 5.13~ 5. 15. (09:00~18:00)	서울대공원 시설과	3일	-
1차합격자 발표	2019. 5. 20.(월)(10:00)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일	서류합격자
2차시험(인·적성)	2019. 5.22.(수)(09:30)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1일	인·적성검사
3차시험(실기)	2019. 5.22.(수)(13:00~)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1일	분야별 실기시험
4차시험(면접)	2019. 5. 29.(수)(14:00)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1일	-
4차시험 합격자 발표	2019. 6. 3.(월)(14:00)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일	-
결격사유 조회	2019. 6. 3.~ 6. 10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5일	합격자 서류접수
최종합격자 발표	2019. 6.17.(월)	서울대공원 홈페이지	1일	개별통보
근로계약서작성	2019. 6.17.~6.21	서울대공원 시설과	5일	최종합격자
신규 임용	2019. 7. 1.(월)	서울대공원	-	-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공원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5. 13.(월) ~ 2019. 5. 15(수), <3일간>
- 접 수 처 : 서울대공원 관리사무소 시설과(채용분야 : 영선분야)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근무시간 내(09:00 ~ 18:00) 접수하여야 하며, 대리접수도 가능합니다.
(대리접수시 응시자 신분증, 위임장, 응시원서, 경력증명서, 접수자 신분증 제출)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서울대공원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등 제출

나. 2차시험(인·적성검사) : 서울대공원홈페이지 공고

- 서류심사 합격자에 대하여 서울대공원에서 지향하는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한 인성검사와 소관업무 처리능력을 평가하는 적성검사 등 실시
- 응시자 준비사항 : 본인수첩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수정테이프

다. 3차시험(실기시험) : 서울대공원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로서 2차시험(인·적성)을 필한사람에 대하여 해당 직무수행 응시자의 분야별 기능숙지도에 대한 평가를 실시
- 응시자 준비사항 : 간편복장

라. 4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서울대공원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중 2차시험(인·적성), 3차시험(실기)를 실시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실시
- 응시자의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 적합성 등 업무추진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마.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공원 시설과 담당자 (정승우 ☎ 500-7424)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의사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성요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붙임 6]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 채용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시험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장 귀하

[붙임 7]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시설정비원 ()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평정요소 (50점 만점)	위원평정		
	상(10~7점)	중(6~4점)	하(3~0점)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총 점	점		
위원서명	성명 (서명)		

면접위원 유의사항

1.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 및 총점란에 점수를 기재
2. 점수 등 정정 시 수정 후 심사위원 서명

합격자 결정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붙임 8]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무중에 알게된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019. . .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 서울대공원장 귀하

【붙임 10】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 × 4cm)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 압인 또는 계인
⑥ 검사 시	서울특별시	공무직		(한 자) ()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가슴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안 질 환		이비인후질 환	
치 아		호흡기질 환	
간 질 환		신경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부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신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 합 격	합격 또는
합격 여부	[] 불 합 격	불합격 사유
	[] 판 정 보 류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백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1】

2018년 서울시 공무원 급여표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단위 : 원)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 지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대민업무수당 (매월지급)	지급총액
1	21,324,120	1,777,010	1,777,010	30,000	23,461,130
2	22,524,120	1,877,010	1,877,010	30,000	24,761,130
3	23,728,800	1,977,400	1,977,400	30,000	26,066,200
4	24,933,000	2,077,750	2,077,750	30,000	27,370,750
5	26,133,720	2,177,810	2,177,810	30,000	28,671,530
6	27,335,760	2,277,980	2,277,980	30,000	29,973,740
7	28,562,400	2,380,200	2,380,200	30,000	31,302,600
8	29,811,360	2,484,280	2,484,280	30,000	32,655,640
9	31,085,880	2,590,490	2,590,490	30,000	34,036,370
10	32,360,160	2,696,680	2,696,680	30,000	35,416,840
11	33,633,240	2,802,770	2,802,770	30,000	36,796,010
12	34,907,520	2,908,960	2,908,960	30,000	38,176,480
13	35,517,480	2,959,790	2,959,790	30,000	38,837,270
14	36,127,440	3,010,620	3,010,620	30,000	39,498,060
15	36,737,160	3,061,430	3,061,430	30,000	40,158,590
16	36,997,440	3,083,120	3,083,120	30,000	40,440,560
17	37,602,600	3,133,550	3,133,550	30,000	41,096,150
18	38,205,600	3,183,800	3,183,800	30,000	41,749,400
19	38,810,640	3,234,220	3,234,220	30,000	42,404,860
20	39,413,520	3,284,460	3,284,460	30,000	43,057,980
21	40,017,480	3,334,790	3,334,790	30,000	43,712,270
22	40,622,160	3,385,180	3,385,180	30,000	44,367,340
23	41,225,520	3,435,460	3,435,460	30,000	45,020,980
24	41,829,480	3,485,790	3,485,790	30,000	45,675,270
25	42,433,680	3,536,140	3,536,140	30,000	46,329,820
26	43,037,520	3,586,460	3,586,460	30,000	46,983,980
27	43,641,360	3,636,780	3,636,780	30,000	47,638,140
28	44,245,560	3,687,130	3,687,130	30,000	48,292,690
29	44,849,640	3,737,470	3,737,470	30,000	48,947,110
30	45,455,880	3,787,990	3,787,990	30,000	49,603,870
31	46,057,440	3,838,120	3,838,120	30,000	50,255,560
32	46,661,520	3,888,460	3,888,460	30,000	50,909,980
33	47,266,440	3,938,870	3,938,870	30,000	51,565,310